

〈主 題〉

통신사업의 경쟁정책과 당면과제

정 홍 식
(정보통신정책실장)

□차 례□

- I. 세계적 동향
- II. 우리나라의 현황

- III. 신규사업자 선정과 본격적인 경쟁구조 정착
- IV. 당면과제

I. 세계적 동향

과거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사업은 공익성 또는 안보적 이유로 인하여 독점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통신사업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로 급변하고 있으며, 현재 WTO에서는 기본통신시장의 개방문제에 관한 협상이 '98년 발효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선진각국은 통신부문의 규제완화, 경쟁촉진을 통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자국실정에 맞는 경쟁확대조치를 발빠르게 취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62년만에 통신법을 전면적으로 개정, 지역전화, 장거리전화, CATV사업간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통신부문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도 전기통신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NTT 분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신사업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리 경쟁시대에서 탈피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일찌기 CATV사업자의 전화서비스를 허용하고 지역전화에 경쟁을 도입하였으며, EU도 '98년까지는 음성전화와 같은 기본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반구조도 자유화하여 완전한 경쟁을 도입할 계획이다.

II.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도 '90년대초부터 통신사업의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통신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정보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통신망의 고도화·다양화를 조기에 달성하며, 다양한 고도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촉진으로 관련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90년 1차 통신시장 구조개편에 따라 국제전화, 무선호출, 이동전화 사업분야에 제한적인 형태의 경쟁을 도입하였고, '94년 2차 통신시장 구조개편으로 시외전화에 경쟁을 도입하고, 개인휴대통신, 주파수공용통신의 경쟁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 '95년에는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 원칙의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결정하여 금년 6월 개인휴대통신 등 7개분야, 27개 기간통신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하였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관계법률을 개정하여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를 구축하고, WTO 협상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제경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II. 신규사업자 선정과 본격적인 경쟁구조 정착

정부는 지난 '95. 12. 15 개인휴대통신, 주파수공용통신, 국제전화 등 7개 역무에 대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공고를 하였고, '96. 4. 17 총 53개 법인이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허가신청법안에 대한 자격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6, 10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발전 등 사업자 선정목표와, 경제력 집중방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27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금번 심사·평가 과정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자격심사반, 비계량평가반, 청문반, 계량평가반, 출연금심사반을 구성·운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다.

비계량 평가항목의 심사·평가는 전문분야별로 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위촉된 42명의 위원을 3개반(각반은 영업부문 7명, 기술부문 7명으로 구성)으로 나누어 심사·평가하였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7인의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그 항목의 점수로 하였다.

비계량평가에 대한 청문 심사·평가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이 대주주로 주로 참여한 PCS 및 TRS를 대상으로 통신사업에의 참여 타당성, 기술개발 지원계획,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 제조 및 S/W산업육성 종합계획 등에 대해 7인의 위원이 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

계량 평가항목의 심사·평가는 허가신청법인·대주주·주요주주의 재무구조에 대한 수익성·안정성·성장성·생산성을 평가하였고, 전산처리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산전문가,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이 복수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심사·평가과정을 거쳐 새로이 선정된 통신사업자의 경쟁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97년까지 필요한 2,700여명의 기술인력을 사업자의 자체인력 충원 및 사내기술 대학 등을 통하여 확보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00년까지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약 5조원의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국내개발 지원 및 외국기업과의 제휴개발, 그리고 해외조달 등을 통하여 장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관련 기술개발에 '98년까지 1,4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전체 장비수요의 70%인 3조 5천여 억원은 국내·외업체간 경쟁공급이 가능하고, 부품을 포함하여 30%에 해당하는 1조 5천억원은 해외에서 조달이 예상된다.

그리고 신규사업자가 조기에 사업을 개시하고, 유효한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의 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

재수단을 확보해 나가는 등 기존사업자와의 공정경쟁 여건조성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지원협의회를 구성, 기존사업자와 유효한 경쟁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운영하여 통신설비 제공 및 상호접속, 기지국 공동설치 문제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IV. 당면과제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통신사업의 경쟁정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요금이 인하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진되고, 사업자는 고객지향적인 영업능력 제고와 경영효율화에 노력하는 등 경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WTO 통신협상 등을 통한 선진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통신사업 경쟁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내망 등 시장진입 제한분야가 존재하여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신사업 관련 규제로 통신사업 경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이 미흡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및 사업자간 분쟁조정 등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제도도 취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시 '98년으로 예상되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통신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통신망의 고도화·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한 통신사업의 경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민간의 통신사업 참여촉진을 위해 현행 사전공고에 의한 허가제도를 개선, 허가기준·절차는 법령·고시에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 추가허가시 심사기준·절차도 간소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방침을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연내에 결정할 예정인데, 시내전화사업의 조기 경쟁도입, 시외전화사업의 추가허가, 위성사업과 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의 회선임대사업 조기 허가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설비제공, 상호접속, 회계 분리, 통신망정보 제공 등 통신사업자간에 이해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실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한 경우 불공정사실 공표, 손해배상책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통신위원회에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여 통신위원회를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규제기관으로 전문화해 나가고, 통신위원회의 통신정책 심의기능은 분리하여 별도의 정보통신 정책자문위를 신설·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공정경쟁보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통신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하여 중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제를 일부 신고제로 완화하고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무선국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서비스 개시전 신고제로 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관리규정을 사후 신고제로 완화해 나가겠다.

넷째, 현행 정보통신 요금체계를 원칙적으로 원가구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시내요금과 장거리요금간의 지나친 격차를 축소하고, 국제 및 이동전화요금은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시내통화권은 시내전화 경쟁 정착시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은 인가하고 가타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요금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객지향적인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도 촉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경쟁환경에 맞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전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한국통신의 경영개선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배제 또는 정부지분 49% 이하 축소방안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회사의 독립경영 보장 및 민영화를 위하여 개인휴대통신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 등 다수기업의 참여 및 독립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TRS(주) 및 전화번호부(주)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홍 식

- 1971년 5월 : 행정고등고서(10회)
- 1971년 11월 : 국무총리 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
- 1972년 9월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77년 9월 : 영국 Bradford대 연수
- 1977년 9월 :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서기관)
- 1979년 4월 : 대통령비서실(전자·통신·정보산업담당)
- 1986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제학)졸업(경제석사)
- 1987년 11월 : 대통령비서실(전자·통신·정보산업담당, 부이사관)
- 1989년 6월 : 체신부(전산망조정위 사무국장)
- 1990년 8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 1991년 1월 : 체신부 정보통신국장(이사관)
- 1993년 1월 : 국방대학원
- 1994년 1월 : 체신부전산관리소장
- 1995년 1월 : 정보통신정책실장겸 초고속정보통신 기획단장(관리관)